

서울특별시마포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2-95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2. 11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개정 사유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」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 조례의 일몰제 규정이 의무화됨에 따라 「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, 법률용어 정비에 따른 일부 조문의 표현을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가.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(안 제4조의2 신설)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」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,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존속기한 연장

나. 기금의 존속기한에 대한 시행일 규정(부칙안)

- 존속기한을 2013년 1월1일부터 적용

다. 그 밖에 법제처의 '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'에 따라 정비

3. 개정조례안 : 따로 붙임

4. 참고 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
- 2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없음

5. 기타 사항

가. 입법예고 : 2012. 10. 8 ~ 10. 29 (제출의견 없음)

나.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검토결과 :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이해 충돌방지 규정 마련 권고

1) 안 제5조에 제5항과 제6항 신설 : 위원의 기피, 해촉 규정 반영

다.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결과 : 원안동의

라. 서울특별시마포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마. 신구조문 대비표 1부.

서울특별시마포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마포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마포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에 따라”로, “노인복지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”을 “노인복지기금”으로, “관리운용에 관하여”를 “관리·운용에”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그 밖의 수익금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하기 위한 각호의 사업에 한하여 지원한다”를 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에 사용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지도육성”을 “육성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7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예탁 관리하도록 하여야”를 “예탁·관리하여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제3조에 따른 지원금은 기금 적립금의 해당 연도 이자수입 범위에서 지원한다.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」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, 구청장은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5조제1항 중 “서울특별시마포구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1인을 포함한 10인”을 “1명을 포함한 10명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각호의 자로한다”를 “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”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위촉한”을 “위촉”으로, “하되”를 “하되, 한차례만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3.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원 2명

제5조제4항 중 “제3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3항에 따른 위촉”으로, “전임자의 잔임기간”을 “전임위원의 남은 기간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,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.

⑥ 위원이 제5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.

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구청장은 매회계년도”를 “구청장은 회계연도”로, “출납

폐쇄후"를 "출납폐쇄 후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제1항의 규정에 의한"을 "제1항에 따른"으로, "매회계년도"를 "회계연도"로, "마포 구의회"를 "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"로 한다.

제11조의 제목 "(회의록등)"을 "(회의록 등)"으로 한다.

제12조제1항 중 "1인과 서기 1인"을 "1명과 서기 1명"으로 한다.

제13조 중 "범위안"을 "범위"로 한다.

제14조 중 "지방재정법·지방재정법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재무회계규칙"을 "「지방재정법」,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및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재무회계 규칙」"으로 한다.

제15조 중 "시행에 관하여"를 "시행에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제4조의2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서울특별시마포구노인복지기금설치</u> <u>및운용조례</u>	<u>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</u> <u>운용 조례</u>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지방자치법 제 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</u> 과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하고 그 <u>관리·운용에 관하여</u>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 142조에 따라 ----- ----- 노인복지기금----- ----- 관리·운용에 ----- -----
제2조(기금의 조성) <u>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u>	제2조(기금의 조성) <u>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u>
1. ~ 3. (생략) 4. <u>기타 수익금</u>	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<u>그 밖의 수익금</u>
제3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노인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<u>각호의 사업에 한하여</u> 지원한다.	제3조(기금의 용도) ----- ----- 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에 사용한다.
1. 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회 <u>지도육성</u> 2. ~ 6. (생략) 7. <u>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</u>	1. ----- ----- 육성 2. ~ 6. (현행과 같음) 7. <u>그 밖의</u> -----

현행	개정안
<p>제4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 (생략)</p> <p>②기금은 구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<u>예탁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<u>기금 적립금의 당해년도 이자수입 범위안에서 지원한다.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4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<u>예탁·관리하여야</u> -----.</p> <p>③ 제3조에 따른 지원금은 <u>기금 적립금의 해당 연도 이자수입 범위에서 지원한다.</u></p> <p>제4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」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<u>기금의 존속기한을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, 구청장은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</u></p>
<p>제5조(기금운용 심의위원회) ①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<u>서울특별시마포구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u></p> <p>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주민생활국장이 되며,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다음 <u>각호의 자로한다. 단,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2. (생략)</p>	<p>제5조(기금운용 심의위원회) ① ----- ----- ----- <u>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원회</u>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<u>1명을 포함한 10명</u> -----.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<u>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 ----- 위촉 -----</u> ----- <u>하되, 한차례만</u> -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3. 마포구의회의 의원2명</p> <p>4. 기타 노인복지관련 단체장 및 노인복지 업무에 학식과 덕망을 가진 전문가</p> <p>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</p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 <p>제6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3. 기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</p> <p>제10조(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) ① 구청장은 매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</p>	<p>3.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의원 2명</p> <p>4. 그 밖에 -----</p> <p>④ 제3항에 따른 위촉 -----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-----.</p> <p>⑤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,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.</p> <p>⑥ 위원이 제5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.</p> <p>제6조(위원회의 기능) ----- - 각 호-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그 밖의 -----</p> <p>제10조(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)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----- ----- 출납폐쇄 후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마포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② ----- 제1항에 따른 ----- ----- 회계연도 ----- ----- 서 울특별시 마포구의회 -----.</p>
<p>제11조(회의록등) ①·② (생략)</p>	<p>제11조(회의록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2조(간사)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 과 서기 1인을 둔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12조(간사) ① ----- ----- 1명 과 서기 1명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3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·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제13조(수당 등) ----- ----- 범위 -----.</p>
<p>제14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·지출·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·지방재정법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.</p>	<p>제14조(준용) ----- ----- 「지방재정법」,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및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」 -----.</p>
<p>제15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15조(시행규칙) ----- 시행에 -----.</p>